

의안번호	제 314 호
의연월일	2015. . . (제 회)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병윤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5년 11 월 23 일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병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 월 23 일
발 의 자 : 최병윤,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임병운, 장선배
김영주

1. 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확대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로 변경함.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5조)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 · 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지원센터 학습자가 충청북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 보장을 규정함 (안 제8조)
- 마.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 · 협력토록 규정함. (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5-39호
- 라. 협의 : 여성정책관실 협의
-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 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후견인” 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

년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욕구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

례」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8조(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학습자가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기관·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 연계·협력)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5.29. 제정 2014.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쥐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돋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

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조례

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 진흥원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 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 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운영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청소년 시설·단체·기관의 장 및 지역 저명인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자문
3.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4. 6. 27]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0 (5년)
- 내용 :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추진
-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기본법

2. 비용 발생 요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제비용

3. 관련조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1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5년, '16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예산액을 토대로 비용 추계
- 물가 변동과 인건비 인상요인을 적용하였음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16~'20)
 - 1,358,965천원(국비951,276, 도비407,689)

다. 재원조달방안

-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16~'20)
 - 1,358,965천원(국고보조금 951,276, 도비 407,689)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불임

6. 작성자 : 여성정책관 변 혜 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6년)	2차년도 (‘17년)	3차년도 (‘18년)	4차년도 (‘19년)	5차년도 (‘20년)	계
세 입	245,940	258,236	271,147	284,704	298,938	1,358,965
국 비	172,158	180,765	189,803	199,293	209,257	951,276
도 비	73,782	77,471	81,344	85,411	89,681	407,689
세 출	245,940	258,236	271,147	284,704	298,938	1,358,965
인 건 비	135,137	141,893	148,987	156,436	164,257	746,710
일반운영비	16,953	17,800	18,690	19,625	20,606	93,674
사 업 비	93,850	98,543	103,470	108,643	114,075	518,581
재원 조달	245,940	258,236	271,147	284,704	298,938	1,358,965
의존 재원	소 계	172,158	180,765	189,803	199,293	209,257
	보조금	172,158	180,765	189,803	199,293	209,25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3,782	77,471	81,344	85,411	89,681
	지방세	73,782	77,471	81,344	85,411	89,68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 · 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